

사회보장제도의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on Recipient's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김성기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Sung-Ki Kim(haesung788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안심소득제가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는데 목적을 갖고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제 관련 측정변수를 적용하여 SPSS 23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안심소득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된 반면,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채택되어 각 요인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는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까지에는 제한을 갖고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심소득제의 도입을 통한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안심소득제가 매우 유용함을 시사하고 이를 통한 생활만족까지 충족하는 데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중심어 : | 사회보장제도 | 안심소득제 | 사회보험 | 사회부조 | 경제적 자립 | 생활만족도 |

Abstract

This study is empirically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on recipient's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650 adult householders benefiting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SPSS 23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pply measurement variables related to the safety incom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social assistance of safety income system were adopted,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independence. The effect of economic independence on life satisfaction was rejected, while the effect of social assistance on life satisfaction was adopted, showing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ach factor. The findings imply that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with support for safe income can be a positive help for economic independence, and unemployment benefit, national pension, long-term care subsidy and health insurance can help to achieve real economic independence, adopting only social assistance with limitation to life satisfaction.

Consequently, the safety income system is very useful in helping recipients to achieve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rough its introduction, but there is some distance to meet their life satisfaction.

■ keyword : | Social Security System | Safety Income System | Social Insurance | Social Assistance | Economic Independence | Life Satisfaction |

접수일자 : 2019년 03월 04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4월 02일

교신저자 : 김성기, e-mail : haesung7887@hanmail.net

I. 서론

사회복지에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관건은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있다.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1]의 『Capitalism and Freedom』에서는 “가난의 완화”로 “가난의 제거”가 근본 복지의 원천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2]. 현행 사회복지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의욕의 상실이다. 여기서 밀튼 프리드먼[1]이 제시한 음소득제는 특정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陽)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음(陰)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음의 소득세는 가구를 기본단위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개인을 기본단위로 시행하여 현행 복지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를 단순화시켜 특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 세제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4인 가구에서 현행 기본 소득 지원 제도의 7개 급여 중 교육·의료·출산·장제 급여는 유지하고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탄력적으로 도입하면 된다[2]. 안심소득제는 5,0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에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지원되므로 소득격차 지표를 현격하게 낮춘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기준 근로 장려금으로 130만원을 받게 되어 처분 가능 소득이 연 2,018만 원이 된다. 반면에 안심소득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에 추가해서 1,245만 원이 지급되어 그의 처분가능소득은 연 3,133만원이 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의 연봉 2,508만 원보다 훨씬 많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3].

이같이 안심소득제는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예산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자료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약 2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노동공급 증대로 인한 국내총생산증가, 행정 및 복지전달 비용의 절약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는 국가가 국민 모두 또는 일부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본소득제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실험 중인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기존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급된다는데 안심소득제와 차이가 있다[2].

안심소득제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Juliet Rhys - Williams)[4]가 고안하고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1]이 자신의 저서 『Capitalism and Freedom』에서 가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근거한 지원 방안이다. 여기서 안심소득제는 기본적으로 특정 가구의 소득이 가구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된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그 격차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안심소득제는 일정 수준의 가구 소득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제와 유사하지만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차별된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제도이다[3].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고 그 결과 모두 시장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시장소득의 결과는 모든 이에게 공평할 수는 없다. 이것은 제도가 불공평하다기 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상황이 모두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취약계층은 상당히 낮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가 선택한 제도나 개인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편이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유인을 높인다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차이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의 목적이 다른 것에도 기인한다.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많이 받는다. 이는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에 비해 소득불균등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데 있다. 특히 실제로 소득불균등을 개선하는 정도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현재 우리의 사회 보장제도가 가지는 소득불균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하여 가시적인 소득불균등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일환으로 안심소득제의 도입이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학제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안심소득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근로의욕의 상실이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4인 가구에서 누군가가 파트타임으로 일해 연 1200만 원을 번다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므로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안심소득제는 생계급여가 줄지 않으면서 근로 의욕을 살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행 제도의 7개 급여 중 교육·의료·출산·장제 급여는 유지하고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대신에 다음과 같은 안심소득제를 도입한다[5]. 이 제도의 목적은 안심소득제는 현행 제도 보다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증대로 인해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키면서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을 크게 늘리는 데 있다. 안심소득제는 2018년 기준 한국의 지니계수가 0.295로 35개 OECD 국가 중에서 20위이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1로 17위이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각각 0.039(13%)와 1.38(27%)씩 낮아져 0.256과 3.72가 되어, 지니계수는 33위로 낮아지고 소득 5분위 배율은 29위로 낮아져 소득격차가 크게 완화된다[6].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근로소득에 추가해서 1,245만 원이 지급되어 그의 처분가능 소득은 3,133만 원이 된다. 이것은 최저 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인상할 경

우의 연봉 2,508만 원보다 훨씬 많다.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

안심소득제는 또한 행정비용을 절약하고 예산누수를 최소화한다. 안심소득제는 기존의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국세청 자료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 유인보다 근로 역유인(work disincentive)을 제공하여 노동공급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생계, 주거, 자활 급여 및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위의 안심소득제를 신설하면 강한 근로 유인을 제공하게 되어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안심소득제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된다.

국가가 모든 (4인) 가구당 2,000만원(국민 1인당 500만원)을 보장해주고 가구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60%씩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저소득 가구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안심소득제와 중복되는 다른 복지제도(예: 생계, 주거, 자활급여, 근로·자녀장려금, 차상위계층 지원 등)가 폐지되면서 그 급여 및 수반되었던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각종 누수가 차단될 것이다. 더욱이 안심소득제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하여 지원 받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노동소득을 증대시켜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보안을 위해 이의 활성화 추구와 동시에 안심소득제도의 핵심지원요인인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금, 건강보험과 사회부조요인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을 고유 변수로 반영하여 측정에 사용하고자 한다.

2. 소득보장 정책과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립은 개인이 경제적 주체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역할을 통해 빈곤 이상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연구를 볼 때, 자아와 관련된 변수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클수록 변화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그 범위와 양은 커진다. 이는 사회경제학적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률이 높아 더 높은 삶의 질과 직업적 성공을 누리게 되고 이와 반대일 경우 취업탐색의 기회가 줄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곽윤영과 정문자[7]는 경제적 자립이 심리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사람이 환경에 대한 통제감,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삶의 목적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경제적 자립과 자아탄력성과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상황적 사건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키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해 관련성을 뒷받침 한다. 즉 노동참여가 적극적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으며 낙관성이나 활력성과도 연관을 가짐을 의미한다.

한편 복지관점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해 주는 선행변수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구원수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돼왔다. 이중 먼저 성별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이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Nickerson[8] 등은 중년 연구를 통해 남녀 간의 경제적 활동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가족 월수입이 증가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수입이 최고인 집단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Helliwell[9]은 교육수준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소득이 높지만, 높은 주관적 안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으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시장 참여, 건강, 인식된 신뢰, 높은 수입입을 제시하였다. Park[10] 등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여 교육수준 또한 주요변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Edwards[11]는 질병 유무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였으며, 이들은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변수를 볼 때 경제적 자립에 대한 변수가 사용목적에 따라 상이하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경제

적 자립에 대한 범주로 앞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요인을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소득보장 정책과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한형수[12], Sousa와 Lyubomirsky[13]은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전체 삶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김희경[14]는 성공적 삶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owe와 Kahn[15]은 생산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지적하였다. Moody[16]는 성공적인 삶의 질의 중심 주제를 생활 만족도로 보았으며, 김동주와 고민석[17]은 경제활동의 기준으로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다. Chou와 Chi[18], Crosnoe와 Elder[19]는 생활만족도를 성공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으며[20], 생활만족도의 구성요소에 있어 Diener[21]은 정서적 평가로서의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의 경험빈도를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이선희와 이정섭[22]은 개별성, 위치지각, 지향성, 충족성, 생기, 순리성, 이경옥과 허소영[23]은 생활의 주요 차원에 따라 신체적 건강, 심리적 안녕, 경제적 안녕,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주거, 사회 환경으로 7가지 차원을 생활만족과 관계하는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인 입장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생활만족도는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질적인 삶의 만족감이라 할 수 있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생활만족도를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해석한 Diener[21]의 연구를 근거로 경제활동을 목표성취 일치감으로, 생활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아감으로 해서 삶에 대한 만족과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III.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1.1 연구모형

기존 선행연구를 볼 때 사회적 약자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변수 중 사회보험은 실업급여, 국민연금, 요양보호, 건강보험 등이 주로 사용된다[24]. 그리고 사회부조에서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이 대상이다. 이들 변수에 따라 변양규[6]가 제안한 안심소득 변수로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요변수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모형은 한국복지패널[25]에서 동지표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이를 기준 척도로 패널 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를 이용하여 독립변수로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반영하고, 종속변수로는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를 반영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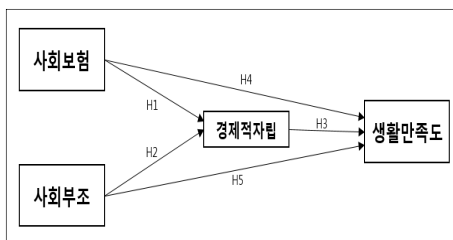


그림 1. 분석의 틀

1.2 가설설정

본 가설검정을 위한 변수로 사회보장변수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대상으로 한 안심소득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로 박기성, 변양규[3]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주요변수임을 제시하고 사회보험의 실업급여, 국민연금, 요양보호, 건강보험을 주 대상으로 삼고 사회부조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근로 장려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 관련 변수는 Nickerson[8] 등은 중년 연구를 통해 남녀 간의 경제적 활동에 가족 월수입이 증가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있음

을 밝히고 경제활동여부와 근로능력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Helliwell[9]은 교육수준에 있어 일반적으로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소득이 높지만, 높은 주관적 안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으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시장 참여, 건강, 인식된 신뢰, 높은 수입임을 제시하여 생활만족요인 또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Park[10] 등은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적 소득 차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렇듯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안심소득제가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 위의 선행연구가 Diener[21]의 연구를 근거로 위 연구모형에 근거한 연구 검정할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1: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안심소득제의 경제적 자립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분석자료 및 연구 대상

2.1 분석자료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26]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한국복지패널>[25]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자료가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상태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고하고 있고, 어떤 개인이나 가구가 잠재적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풍부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최근 연도 배포자료인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5년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25]에서 제공한 10차 자료를 사

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25] 자료는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로 표본 대상은 성인 가구주 6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변수의 선정과 분석방법

3.1 측정변수의 선정

- **안심소득** : 안심소득제는 박기성, 변양규[3]가 제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호금, 건강보험과 사회부조로서 기초연금, 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구성하였다.
-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 : 경제적 자립변수는 파악영, 정문재[7]가 사용한 근로능력, 경제활동만족, 근로소득과 생활만족도는 경제활동, 생활만족, 건강상태 만족으로 사용하고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 **통제변수** :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 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은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종교는 있음과 없음을 기준집단으로, 혼인상태는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는 다양한 구성개념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문헌을 통해 검증된 측정항목들을 사용하였다. 또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23.0 버전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의 값을 계산하였으며, 가설 검정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측정

변수		변수명	변수측정 및 방법
독립 변수	사회 보험	실업 급여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국민 연금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사회 부조	장기 요양 보호금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건강 보험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기초 연금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생계급여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매개 변수	경제적 자립	근로 능력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경제 활동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근로 소득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종속 변수	생활 만족	경제활동 동만족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생활 만족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건강상태 만족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통제 변수	인구 사회 학적	성별	1문항 재코딩 0=남성, 1=여성
		종교	1문항 재코딩 0=없음, 1=있음
		혼인 상태	1문항 재코딩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3=이혼, 4=사별, 5=별거
		학력	0=초등졸 이하 1=중학교졸 이하 2=고등학교졸 이하 3=전문대졸 이하 4=대학교졸 이하 5=대학원졸 이상
		수급 여부	0=미수급, 1=수급
		수입	1= <200 2= 200<,<300 3= 300<,<400 4= 400<,<500 5= 500>

IV. 연구 결과 분석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1.1 인구 통계적 특성 빈도 분석

표 2. 인구 통계적 특성 빈도 분석 결과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성	248	42.7	42.7	42.7
	여성	333	57.3	57.3	100.0
종교	없음	166	28.6	43.6	43.6
	있음	215	37.0	56.4	100.0
혼인 상태	배우자 없음	316	54.4	54.4	54.4
	배우자 있음	109	18.8	18.8	73.1
	이혼	78	13.4	13.4	86.6

	사별	58	10.0	10.0	96.6
	별거	20	3.4	3.4	100.0
학력	초등졸 이하	221	38.0	38.0	38.0
	중학교졸 이하	154	26.5	26.5	64.5
	고등학교졸 이하	82	14.1	14.1	78.7
	전문대졸 이하	49	8.4	8.4	87.1
	대학교졸 이하	27	4.6	4.6	91.7
	대학원졸 이상	48	8.3	8.3	100.0
수급 여부	미수급	198	34.1	41.9	41.9
	수급	274	47.2	58.1	100.0
수입	<200	51	8.8	45.1	45.1
	200<=,<300	9	1.5	8.0	53.1
	300<=,<400	20	3.4	17.7	70.8
	400<=,<500	22	3.8	19.5	90.3
	500=>	11	1.9	9.7	100.0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248명(42.7%), 여성 333명(57.3%)로 여성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종로는 166명이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있음은 215명(37%)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로는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가 316명(54.4%)로 과반수를 나타냈고, 배우자 없음은 109명(18.8%), 이혼은 78명(13.4%), 사별 58명(10%), 별거 20명(3.4%)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여부는 미수급 198명(34.1%), 수급 274명(47.2%)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 51명(8.8%),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9명(1.5%),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20명(3.4%), 400만 원 이상~500만원 미만 22명(21.7%), 500만 원 이상 11명(1.9%)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221명(38%), 중학교 졸업 이하 154명(26.5%), 고등학교 졸업이하 82명(14.1%), 전문대 졸업이하 49명(8.4%), 대학교 졸업이하 27명(4.6%), 대학원 졸업이상 48명(8.3%)로 나타났다.

1.2 신뢰도 분석

표 3.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항목	Cronbach의 알파
사회부조	3	0.648
사회보험	4	0.675
경제적 자립	3	0.808
생활만족	3	0.651

본 연구에 사용된 구성개념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경제적 자립, 생활만족 등 총 4개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호금, 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있고, 사회부조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근로자녀장려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제적 자립은 근로능력, 경제활동, 근로소득으로 구성되어있고 생활만족은 건강상태만족, 경제생활만족, 생활전반 만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부조의 Cronbach's Alpha값 0.648로 허용기준치인 0.6이상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신뢰도 값을 확보하였다.

사회보험은 Cronbach's Alpha값 0.675, 경제적 자립은 Cronbach's Alpha값 0.808, 생활만족은 Cronbach's Alpha값 0.651로 각 척도가 만족할만한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제대로 측정하였는지 검정하는 방법으로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AMOS 16.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집중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표준화 요인부하량 최소 0.5이상이 되어야 하고 C.R은 1.965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5이상, 개념신뢰도의 경우 0.7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는데 변수들의 집중타당성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분석결과를 보면 사회보험의 측정지표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였으며, 개념신뢰도 0.82, 평균분산추출값 0.537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사회부조는 각 측정지표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0.5이상,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였고, 개념신뢰도 0.709로 나타나 타당성을 확보하였지만 평균분산추출값이 0.454로 다소 낮게 나왔다. 그러나 신뢰도와 요인부하량등이 기준치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중요변수로 판단하여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경제적 자립의 측정지표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였으며, 개념신뢰도 0.755, 평균분산추출값 0.509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생활만족의 측정지표도 요인부하량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고, C.R도 1.965 이상을 만족하였으며, 개념 신뢰도 0.773, 평균분산추출값 0.537로 타당성이 확보되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 집중타당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지표	요인 부하량	C.R	개념 신뢰도	AVE
사회보험	실업급여	0.822	16.394	0.8200	0.536
	국민연금	0.785	16.088		
	건강보험	0.567	12.178		
	장기요양보호금	0.708	-		
사회부조	기초연금	0.502	9.855	0.7096	0.454
	생계급여	0.675	12.702		
	근로자녀장려금	0.683	-		
경제적 자립	근로능력	0.578	8.514	0.7554	0.508
	경제활동	0.588	8.534		
	근로소득	0.691	-		
생활만족도	건강상태	0.721	13.331	0.7730	0.537
	경제활동	0.5	10.06		
	생활전반	0.6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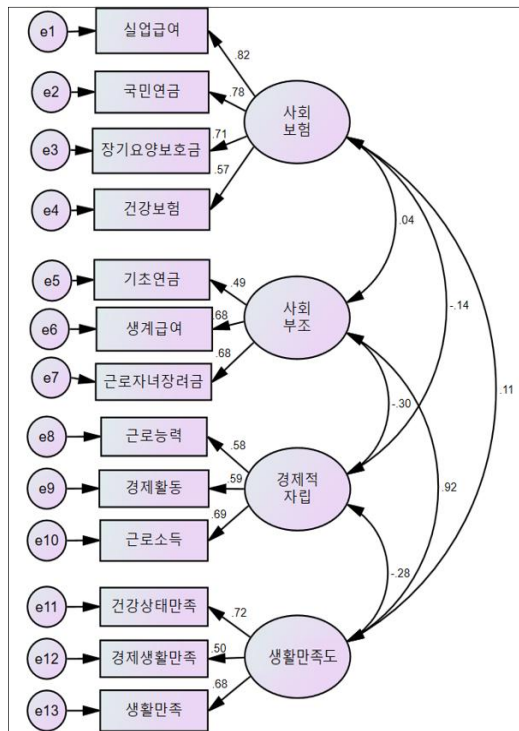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2. 가설검정

2.1 연구모델

연구모델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Chi-square = 211.795, (df= 59), p=0.000, GFI=0.945, AGFI=0.916, NFI=0.897, CFI=0.923 RMR=0.036,로 나타났다. GFI, AGFI, NFI, CFI는 0.9 이상, RMR은 0.05 이하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구조방정식의 모형은 검증되었으며, 경로계수의 적합도도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연구모델 적합도

모델적합도	GFI	AGFI	CFI	NFI	RMR
적합도지수	0.945	0.916	0.923	0.907	0.036
사용수준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2.2 가설검정

표 6. 최종 경로계수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Estimate	S.E.	C.R.	P	가설채택여부
경제적 자립 < 사회보험	-0.12	-0.09	-0.086	0.039	-2.205	0.027	채택
경제적 자립 < 사회부조	-0.29	-0.3	-0.301	0.068	-4.443	***	채택
생활만족도 < 경제적 자립	0.1	0.01	0.011	0.062	0.173	0.863	기각
생활만족도 < 사회보험	0.08	0.06	0.06	0.035	1.686	0.092	기각
생활만족도 < 사회부조	0.92	1.02	1.022	0.09	11.29	***	채택

가설1의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0.012 (C.R.= -2.205,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2의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0.29 (C.R.=-4.443,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3의 안심소득제의 경제적 자립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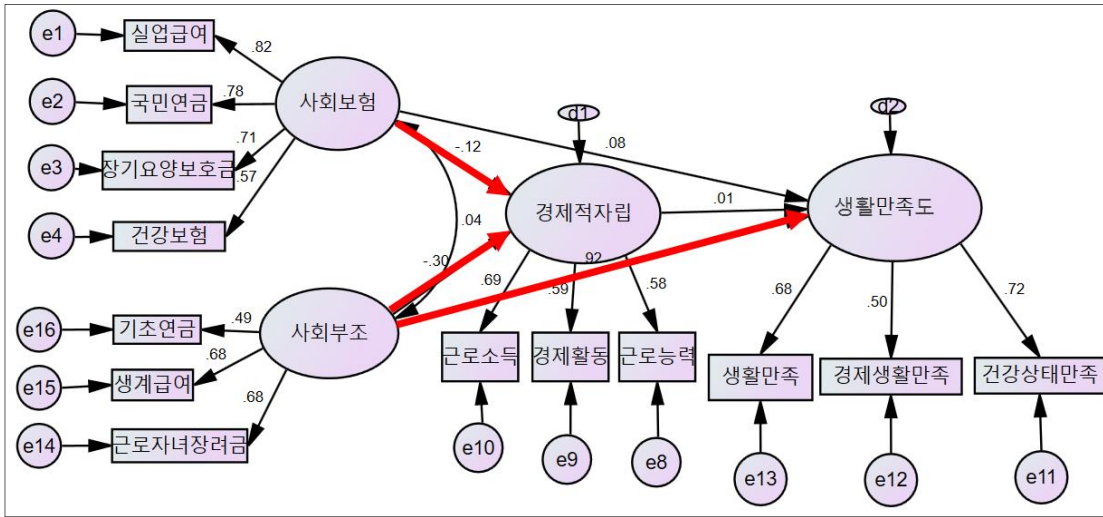


그림 3. 최종 경로모형

는 0.1 (C.R.=0.173,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가설4의 안심소득제의 사회보험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C.R.=1.686,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가설5의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연구가설은 경로계수는 (C.R.=11.29, 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3. 논의

이상의 연구 결과 안심소득제로서의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는 경제적 자립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쳐 채택되었으며,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각되었다. 안심소득제의 사회부조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긍정적으로 채택되어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안심소득을 위한 지원으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생활만족에는 사회부조만 채택되어 실업급여, 국민연금, 장기요양 보조금, 건강보험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나 국민연

금, 장기요양보호금, 건강보험금이 기각된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주 수혜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요인의 대부분이 젊었을 때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전제로 충분히 일정기간 납부가 되었을 때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부조는 사회적 약자가 가질 수 없는 납입조건으로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이들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소한의 경제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본 제도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준 학제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V. 결론

전체적으로 안심소득제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결합하면서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임금의 절댓값을 높이는 안심소득제가 될 수 있음을 실증해주었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안심소득제에 의해 국가는 모든 (4인) 가구에 적어도 연,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국가가 보조금으로 연 2,000 만원을 지원하게 되므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가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득의 60%만큼씩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그러므로 근로 장려금

보다 더 강하게 근로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보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 장려금이 시행되는 현재보다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됨으로 강한 근로유인이 제공되어 노동공급 및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가짐을 직시한다.

이같이 안심소득제의 도입은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하지 않아도 저소득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및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대신 노동공급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므로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면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수준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적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 대다수 지원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있어 왔다[2][3][5][6]. 그리고 모든 가구(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소득5분위배율이나 지니계수 등 소득격차 지표를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5]. 그러나 안심소득제는 국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게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나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구에게는 그 소득에 반비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제와 중복되는 다른 복지와의 중복성은 낮다는 점에서 경제적 유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안심소득제는 현행 제도보다 더 강한 근로유인을 제공해 국민 경제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의 증대로 인해 국가의 지원액을 감소시키면서 저소득 가구의 처분가능 소득을 크게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M. Friedma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Jones, D. Caradog(1942), "A New Social Contract: Abstract," *Nature*, Vol.150, No.12, 1962.
 [2] 박기성, "최저임금과 안심소득," 월드리뷰, 제31권, 제9호, pp.54-56, 2018.

[3] 박기성, 변양규,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제40권, 제3호, pp.57-77, 2017.
 [4] Juliet Rhys-William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a Suggestion for a New Social Contract* London, MacDonald, 1942.
 [5] 김우철, "기본소득제 vs 안심소득제, 복지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묻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 pp.1-33, 2017.
 [6] 변양규,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한국경제연구원, pp.1-4, 2017.
 [7] 박윤영, 정문자,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121-141, 2001.
 [8] D. P. Nickerson, M. West, and G. Odorizzi, "Did coordinates Vps4-mediated dissociation of ESCRT-III from endosomes," *J. Cell Biol*, Vol.175, pp.715-720, 2006.
 [9] J. F. Helliwell,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Elsevier, Vol.20, No.2, pp.331-360, 2003.
 [10] A. Park, S. Xiaoqing, Z. Junsen, and Z. Yaohuim, *Rising returns to skill, labor market transition, and the growth of wage inequality in China*. Working paper, 2004.
 [11] J. N. Edwards and D. L. Klemmack,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28, No.4, pp.497-502, 1973.
 [12] 한형수, "한국 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9권, pp.113-142, 2004.
 [13] L. Sousa and S. Lyubonirsky, "Life satisfaction," In J. Worell (Ed.),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Vol.2, pp.667-67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2001.
 [14] 김희경,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제32권, 제3호, pp.819-834, 2012.

- [15]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Random House, 1998.
- [16] H. R. Moody, *Productive aging and the ideology of old age*, In N. Morrow-Howell, J. Hinterlong, & M. W.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pp.175-196,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 [17] 김동주, 고민석, “경제활동상태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제24권, 제2호, pp.137-164, 2014.
- [18] K. L. Chou and I. Chi, “Financial strain and life satisfaction in Hong Kong elderly Chinese: Moderating effect of life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ging and 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Vol.6, No.2, pp.172-177, 2002.
- [19] R. Crosnoe and G. H. Elder,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A Life Course Approach to Ag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65, No.4, pp.309-328, 2002.
- [20] 김동배, 정규형, 이은진, “노인평생교육 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과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3호, pp.801-817, 2012.
- [21]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55, pp.34-43, 2000.
- [22] 이선희, 이정섭, “노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권, pp.588-595, 2002.
- [23] 이경옥, 허소영, “포커스집단을 통한 도시 노인의 삶의 질 개념 연구,” *한국노년학*, 제28권, 제2호, pp.269-290, 2008.
- [24] 강신욱,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한국 사회복지정책*, 제24권, 제1호, pp.218-226, 2017.
- [25] <http://kosis.kr2018>, 2019.01.13

저 자 소 개

김 성 기(Sung-Ki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2년 2월 :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2007년 8월 ~ 현재 : 동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강사

교 사회복지과 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경제, 기본소득, 빈곤, 소득양극화 및 불평등, 사회보장제도